

# 평창군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안

(박춘희 의원)

의안 번호	488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: 2025년 10월 14일

발 의 자 : 박춘희 의원

찬 성 자 : 남진삼, 김광성, 김성기 의원

## 1. 제안이유

- 국민권익위원회 「의류수거함 설치 및 운영관리 개선 방안」 권고안에 따라 우리군도 의류수거함의 설치 및 운영·관리 기준을 규정하여 의류수거함을 적정 관리하고 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군수의 책무(안 제3조)
- 나. 의류수거함 운영·관리자의 책무(안 제4조)
- 다. 의류수거함의 설치 및 운영·관리(안 제5조)
- 라. 운영·관리자의 업무 등(안 제6조)
- 마. 의류수거함 무단설치에 대한 조치(안 제8조)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, 「폐기물관리법」
- 나. 예산조치 : 불임참조(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)

다. 집행기관의견수렴 : 2025. 9. 29. ~ 2025. 10. 13.(15일간), 아래 표 참조

조례안(의회안)	수정안(환경과)	사유	의회 의견
<p>제8조(의류수거함 무단설치에 대한 조치)</p> <p>① 군수는 협의 없이 도로, 인도 등에 의류수거함을 설치하여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무단설치자에게 해당 의류수거함을 자진하여 철거하도록 명해야 한다.</p>	<p>제8조(의류수거함 무단설치에 대한 조치)</p> <p>① <u>의류수거함 운영·관리자는</u> 군수와 협의 없이 도로, 인도 등에 무단으로 의류수거함을 설치하여 주민의 불편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<u>해당 의류수거함을 자진철거 하여야 한다.</u></p>	<p>군수의 철거 명령 이전에 운영·관리자에게 철거 의무를 부여하여 무단설치 의류수거함에 대한 관리책임을 명확히 하고, 신속한 처리 및 민원 예방 도모</p> <p>※ 「논산시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」, 「인천광역시 부평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」 참고</p>	<p>[수용]</p>

## [조례안]

평창군 조례 제            호

# 평창군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안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에 따른 의류수거함의 효율적인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재활용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적용 범위)** 이 조례는 평창군 관내에 설치·관리하는 의류수거함에 적용되며 공동주택이나 사유지에 설치된 의류수거함은 제외한다. 다만, 평창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가 의류수거함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은 적용 범위에 포함할 수 있다.

**제3조(군수의 책무)** 군수는 평창군의 특성을 고려해 수거함을 적정하게 관리하고, 의류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·이행할 책무를 진다.

1. 재활용 가능한 의류의 분리수거체계 운영
2. 의류수거함의 설치 및 운영·관리에 관한 사항
3. 의류 재활용 활성화 및 주민홍보에 관한 사항
4. 「폐기물 관리법」 제8조제1항 등을 위반한 의류수거함 지도·단속

**제4조(의류수거함 운영·관리자의 책무)** 의류수거함 운영·관리자는 의류수거함 관리와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, 군수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.

**제5조(의류수거함의 설치 및 운영·관리 등)** ① 군수는 의류수거함을 설치 및 운영·관리할 수 있다.

② 군수는 의류수거함의 효율적인 설치 및 운영·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류수거함 설치 및 운영·관리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기관 이 나 단체 또는 업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
**제6조(운영·관리자의 업무 등)** ① 운영·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 행한다.

1. 의류 재활용을 위한 수집·운반 및 처리
2. 의류수거함 설치 및 유지관리
3. 의류수거함 주변의 청소 및 청결 유지
4. 그 밖에 군수가 정한 의류수거함 관련 업무

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업무 처리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·관리 자에게 보고하게 하거나 교육 및 관리·감독을 할 수 있다.

**제7조(실태조사 및 평가)** 군수는 의류수거함 실태조사 및 운영·관리에 대 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 치할 수 있다.

1. 의류수거함 운영·관리 위탁의 해지
2. 의류수거함 운영·관리 구역의 확대 또는 축소
3. 평가결과에 대한 시정 조치 및 명령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 항

**제8조(의류수거함 무단설치에 대한 조치)** ① 의류수거함 운영·관리자는 군 수와 협의 없이 도로, 인도 등에 무단으로 의류수거함을 설치하여 주민의

불편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해당 의류수거함을 자진철거 하여야 한다.

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의류수거함을 강제철거하고 행정절차를 거쳐 반환 또는 폐기처분 할 수 있다.

1. 제1항에 따른 철거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
2. 무단 설치된 의류수거함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[관계법령]

### <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>

**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**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국가의 시책에 따라 관할 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할 책무를 진다.

**제5조(사업자의 책무)** ① 사업자는 제2조의2에 따른 기본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,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.

**제13조(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)** ① 환경부장관은 재활용가능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발생량과 재활용 여건을 고려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를 위한 분류·보관·수거 등에 관한 지침을 정할 수 있다.

②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분리수거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,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매년 재활용가능자원의 발생량과 분리수거량 등을 조사하여 공표(公表)하여야 한다.

③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침에 따라 재활용가능자원의 보관 시설이나 용기를 설치하는 등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분리수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### <폐기물관리법>

**제8조(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)** ①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, 특별자치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이나 공원·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리거나, 특별자치시, 특별자치도, 시·군·구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 또는 공원·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지정한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생활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.

②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지역에서 해당 특별자치시, 특별자치도, 시·군·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③특별자치시장, 특별자치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·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7조제2항에 따라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.

## 비용추계서 미침부 사유서 (제3조제5항 관련)

### 1. 비용발생 요인

- 의류수거함 운반 및 철거비

### 2. 미침부 근거 규정

- 「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5항제1호

### 3. 미침부 사유

-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

### 4. 작성자

작성자	평창군 도시안전국 환경과장 신양문
연락처	033 - 330 - 2362